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현황 및 제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신희^{1*}, 신동화²

¹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교수, ²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계열 교수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Shin-Hee Kim^{1*}, Dong-Hwa Shin²

¹Professor, Dept. LINC+Project Department, KonKuk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Beauty & Cosmetics, O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주제어 : 미용문신시술, 반영구화장, 전문자격사 제도, 카이스퀘어 검증, 심층 인터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isting legal limitations on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d to suggest leg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ician and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depth interviews from 10 experts in the field of beauty and law and survey from 101 respondents who experienced with tattooing are as follows. First, 10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law does not reflect real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a number of procedures are made illegal, and suggested opin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Second, only 15.7 percent of procedures had been conducted by a doctor, and non-medical practitioners showed higher quality of procedure,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Side effects do not differ between groups, and 73.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qual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This study empirically suppo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government policies that reflect social awareness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Key Words : Beauty tattooing, Semi-permanent makeup,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Chi-square analysis, Depth interview

*Corresponding Author : Shin-Hee Kim(sinhee1007@kku.ac.kr)

1. 서론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에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작용하며, 비언어적 역할(Non-Verbal Role)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한다[1]. 외적인 매력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직무와 관련한 생산성이 향상되는 한편[2]. 이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평가항목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용모, 복장, 단정함 등과 같은 '유형성(Tangibility)' 요인을 강조하기도 한다[3].

2007~2017년의 미용서비스 산업 증가추이를 나타낸 국가통계포털(KOSIS)[4]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용서비스 산업은 2007년 기준, 관련 사업체수 108,095개, 종사자수 164,990명, 매출액 약 4조 185억 원 규모에서 2017년 기준 사업체수 148,701개, 종사자수 225,635명, 매출액 약 6조 6,000억 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적, 심리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수단으로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Tattooing), 혹은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Makeup)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5]. 이러한 방식은 메이크업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간 완성도 높은 자연스러움과 편리성의 이점을 형성한다[6,7]. 따라서 국내 뷰티산업의 대중화 및 매출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K-Beauty 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미용기술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8].

이렇듯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법률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미용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5,9]. 선행연구[10-12]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합법화를 위한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대중성에 따라 합법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13], 국내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2013년 12월 '문신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6].

본 연구는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적 한계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관련 자격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함께 한계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는 일반적으로 화장을 의미하는 '메이크업(Makeup)'과 문신의 특성에 기인한 지속성을 의미하는 '퍼머넌트(Permanent)'의 합성어로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Makeup)'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5,7]. 이외에도 피부에 소량의 색소를 주입하는 미세색소침착술을 뜻하는 '마이크로피그멘테이션(Micro-pigmentation), 윤곽화장 및 수정을 강조하는 '컨투어 메이크업(Contour Makeup)'으로 표현되기도 한다[7]. 한편, 기존의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구분하지 않는 특정 지역에서는 '퍼머넌트 타투(Permanent Tattoo)', '더마피그멘테이션(Dermapigmentation)', 혹은 '스킨피그멘테이션(Skinpigment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14], 각각의 용어는 모두 미용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문신으로부터 발전하여 심미적 가치를 장기간 지속시켜주는 화장술, 혹은 시술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의 부위에 시술하며 대상의 피부 특성, 생활 습관, 사용 색소 및 기법 등에 따라 1~2회의 시술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유지된다[11]. 최근에는 메이크업의 적용뿐만 아니라 흉터, 화상 등에 미세 색소술을 적용함으로써 의학적 한계를 해소하는 측면으로도 활용된다[15]. 반영구적 성격에 기반하여 유행에 따른 유연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속성에 따른 편리성과 경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콤플렉스를 미용 기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 등에 기인하여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대중화의 추세에 있다.

2.2 국내 법률적 제도 및 현황

우리나라는 미용 목적의 문신을 비의료인이 실시하

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16]에서 공시하는 판례정보 및 법령에 따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1992년 대법원에서는 미용을 목적으로 비의료인이 눈썹 등의 피부부위에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를 불법으로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82조」에 의거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사실상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그 효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의 대다수는 의사가 아닌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고용한 미용 전문가에 의해 대리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시술소 및 출장서비스 등을 통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따라 시술자와 환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17]. 더 나아가 반영구화장은 교육을 통한 시술자 배출은 합법이지만, 시술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11].

최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대중화에 힘입어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의 메이크업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18].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는 문신사 법안이 발의되어 기존의 법률과 사회 현상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규제 개혁 추진 TFT(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문신 합법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11]. 또한 2013년, 정부 주도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서는 '타투이스트(Tattooist)'를 유망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 합법화를 통해 육성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황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5일자로 2,617명이 참여하여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를 위한 국민청원의 목소리를 모으기도 하였다[19].

2.3 국외 주요국 현황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하여 미국은 1990년 영구화장 전문가협회, SPCP(The Society of Permanent Cosmetic Professionals)를 설립하여 안전한 제도적 장치 하에 관련 시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0]. 구체적인 관리를 위해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는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규정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사용되는 염료, 화장품, 색소 첨가물 등의 규정을 수립하며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에서는 시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21].

미국은 3개 주를 제외하고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허가, 시술행위, 개업 등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합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뉴욕 주는 주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ealth Tattoo Artist'에 해당하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시술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시술자 및 피시술자가 보험 혜택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6].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8세 이하의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제한하는 한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정신질환, 화상, 피부병, 급성 기관지염 등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을 보유한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10].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 등 구급법과 관련한 자격과 함께 혈액을 통한 병원균에 대한 감염 및 오염 등의 관리교육에 대한 철저한 규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문신사에게 합법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11].

유럽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인식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독일의 경우 반영구화장 등과 관련한 미용 목적의 문신은 수공예의 성격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교육과정 및 자격증 제도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도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21]. 일반적으로 독일 문신사 협회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관련 교육 및 기술을 배울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건관리기관에서 시술소의 위생규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시술자의 자격 및 면허발급과 관련한 제도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술환경 및 위생·안전 측면에 대한 규정에 초점을 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시술을 합법화하고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법 제15조 1항, 2항」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등록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피시술인의 요청에 따라 출장시술도 가능하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22].

프랑스도 독일과 영국과 동일하게 일반인의 시술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술업소의 등록 및 관련 절차, 시술자격, 위생조건, 시술 용품의 사용·관리, 시술 후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프랑스 보건부에서 관련 자격제도를 규정한다[10].

일본은 「의사법 제7조」에 따라 의사가 아닌 경우,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압의 멸균소독기를 비치하고 세무서에 정식 신고절차를 밟으면 의사가 아닌 자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면허 발급의 교육 및 자격요건은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관련 협회 및 기관의 강력한 자율적 규제의 전통성에 기인하여 위생상의 문제가 철저히 관리되어지고 있다[22]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수집과 설문조사를 통한 피시술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피부미용 분야의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2019년 08월 01일부터 31일까지 면대면(Face-to-Face) 방식의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집하였다.

한편,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2019년 07월 01일부터 31일까지 약 30일 동안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포한 12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0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연구도구 및 절차

전문가 인터뷰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국내 현황의 인식 및 문제점, 적정 시술자(의사, 혹은 미용 전문가)에 대한 판단과 사유, 합법화를 위한 전문 자격사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여부 및 제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총 5가지 항목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5개 문항, 개인의 문신시술경험을 파악하는 7개 문항,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6개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21.0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전문가 면대면 인터뷰 결과

미용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Table 1에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하여 10명의 전문가 패널은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서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미적 가치가 증시되는 미용 부문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 결여 및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중·장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는 등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불법으로 인해 시술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피해자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연계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10명의 전문가 패널 모두 자격, 인원, 감독관리 등 관련 규정의 체계화를 전제로 '전문 자격사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입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하여 시술을 위한 문신의 허용 범위, 대상, 시설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응답자 A, B, C, D). 한편,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시장 수요 증대 및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다수의 국민이 시술에 따른 긍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화 절차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응답자 E, F), 자격사 제도를 위한 교육 연구의 선행과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응답자 H, I, J).

10명의 전문가 패널에 대한 질의 내용의 논점은 사

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격 및 관리 기준의 체계화에 기반한 전문 자격사 제도의 도입은 의사와 미용인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시술자라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합법화를 통한

규제 해소는 기존의 불법 시술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피시술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연쇄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Table 1. Summary of Depth-Interview Results of 10 Experts related to the Law and Beauty Sector

Question and Answer (Q&A)	
Q1	"What is your own thinking or opinion about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swer	<p>"The practice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itself is positive, but some tattoos that can create disgust are negative" (Respondent A, D)</p> <p>"The procedure itself is an individual thought of person who pursues aesthetic beauty and is now a global trend, so I think it is quite positive." (Respondent B, C, E, F, G, H, I, J)</p>
Q2	"Do you think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state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swer	<p>"Although the current law prescribes it as a medical practice, it is common to see illegal procedures centering on middle and older women due to lack of doctor's professionalism in beauty sector and price competitiveness." (Respondent A)</p> <p>"The majority of procedures are considered illegal even by beautician, not by medical professionals, the law does not reflect reality (Respondent B, C, F, H, I, J)</p> <p>"As it is carried out in the dark, proper action is not taken on the dye and treatment apparatus and safety of the victim's infection and side effects is not protected." (Respondent A, B, C, D, F, G, I)</p> <p>"The negative meaning of national consensus is strongly linked to the creation of a common tattoo technique, even though it is a tattoo procedure for beauty purposes." (Respondent E)</p>
Q3	"Do you think that tattooing or procedure for beauty purposes should be performed by beautician?"
Answer	<p>"I strongly agree with that it to be carried out by a beautician on the basis that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standards are in place. Because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is literally for beauty, not for medical purposes." (Respondent A, B, C, D, F, G, J)</p> <p>"it should be performed by specialists, a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medical part and beauty one." (Respondent E, H)</p> <p>"Both the medical doctor and the beautician are possible if the doctor obtains knowledge about beauty, or the beautician obtains professional knowledge on tattoos and hygiene laws." (Respondent I)</p>
Q4	"To perform the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legally, do you agree with that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Answer	"If a thorough system such as qualifications, personnel, supervision and management is established, I would actively support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spondent A, B, C, D, E, F, G, H, I, J)
Q5	"What specific measures do you think are needed to introduce a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Answer	<p>"The agreement or arbitration about current problems of legal system between doctor and beautician should be solved first, and a clear reference system for the allowable range, target, and facility of tattoos for procedure is required." (Respondent A, B, C)</p> <p>"Detailed criteria such as criteria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criteria for use of products and products for tattooing procedure, periodic management system, and clarity of the managing body are required." (Respondent D)</p> <p>"Legislation based on intervention with medical practitioners is required under the current Medical Act in order to enable a large number of people to enjoy positive benefits from the procedure, reflecting the increased demand and social atmosphere in the relevant fields." (Respondent E, F)</p> <p>"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are required according to clear guidelines and education research is required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s, and a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train talented and knowledgeable people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urriculum." (Respondent H, I, J)</p>

4.2 설문조사 결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시술자 101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결측치를 제외하고 Table 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표에 따르면, 응답자 중 남성은 15.3%, 여성은 84.7%로써 여성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시술자의 연령은 20~30대의 비중이 전체 피시술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시술 횟수는 주로 1~2회의 시술을 받는 것이 88.9%로 나타났다.

Table 3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피시술자의 일반적 현황을 집계하여 제시하였다. 응답한 피시술자 중 48.6%가 뷰티 관련 업체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3.6%는 출장서비스, 13.9%는 타투숍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합법적인 시술에 해당하는 병원에서의 시술은 11.1%로 대다수의 시술이 불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amples for Survey

Category	Subsection	Frequency(N)	Percent(%)
Gender	Male	15	15.3
	Female	83	84.7
Age	20-29	41	41.0
	30-39	26	26.0
	40-49	17	17.0
	50-59	13	13.0
	Over 60	3	3.0
Academic Career	High school graduate	16	16.0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	37	37.0
	college graduate (bachelor)	37	37.0
	Attending graduate school	7	7.0
	Graduate from graduate school	3	3.0
Job	Student	35	35.0
	Office worker	16	16.0
	Self-employment	24	24.0
	Public official	6	6.0
	Homemaker	14	14.0
	Unemployed person	2	2.0
Number of Procedure	Etc.	3	3.0
	Once	48	48.5
	Twice	39	39.4
	Three times	7	7.1
	Four times	2	2.0
	Five times	2	2.0
	Over five times	1	1.0

Table 3. General Details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Category	Subsection	Frequency(N)	Percent(%)
Place of Procedure	Hospital	8	11.1
	Beauty shop	35	48.6
	Tattoo shop	10	13.9
	House call service	17	23.6
	Etc.	2	2.8
Procedure Area	Eyebrow	52	57.8
	Eye-line	23	25.6
	Lip	10	11.1
	Lip-line	3	3.3
	Etc.	2	2.2
Person who Perform a Procedure	Doctor	11	15.7
	Beautician	46	65.7
	Tattooist	13	18.6

시술 부위는 눈썹(57.8%)과 아이라인(25.6%)이 전체 83.4%에 해당하였으며, 의사로부터 합법적인 시술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에 불과하였다. 즉,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용 전문가(65.7%)와 타투이스트(18.6%)로부터 시술받는 경우가 84.3%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이 제도권 영역 밖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선행연구[5,9]와 일치된 결과이다.

Table 4는 의사와 미용 전문가, 타투이스트에게 각각 시술을 받은 피시술자가 지각하는 시술품질, 만족도, 부작용, 추천의도에 대한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시술 부작용에 대한 시술자 간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술품

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미용 전문가가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의사의 시술품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7.3%로 3명의 시술자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만족도도 미용 전문가의 경우 76.1%에 해당하는 긍정적 만족도가 집계되는 한편, 의사로부터 시술받은 긍정적 만족도는 27.3%에 불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술 추천의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타투이스트(84.6%), 미용 전문가(78.2%)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으며 의사의 시술에 대한 긍정적 추천의도는 27.3%로 3개 집단 중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하여 피시술자는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 에서 의사보다 미용 전문가, 혹은 타투이스트의 시술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Chi-Square Analysis for Differences between Procedure Group

Category	Likert-Scale	Person who Perform a Procedure						$\chi^2_{(p)}$
		Doctor		Beautician		Tattooist		
		N	%	N	%	N	%	
Procedure Quality	Very poor	2	18.2	0	0.0	0	0.0	33.157*** (0.001)
	Poor	3	27.3	1	2.2	0	0.0	
	Fair	3	27.3	8	17.4	6	46.2	
	Good	1	9.1	20	43.5	5	38.5	
	Excellent	2	18.2	17	37.0	2	15.4	
Procedure Satisfaction	Not at all satisfied	2	18.2	0	0.0	0	0.0	40.457*** (0.000)
	Below standards	5	45.5	2	4.3	0	0.0	
	Meets standards	1	9.1	9	19.6	6	46.2	
	Above standards	1	9.1	17	37.0	6	46.2	
	Far above standards	2	18.2	18	39.1	1	7.7	
Procedure Side Effect	Never	1	9.1	16	34.8	3	23.1	13.525 (0.332)
	Rarely	3	27.3	15	32.6	6	46.2	
	Sometimes	3	27.3	5	10.9	4	30.8	
	Often	3	27.3	9	19.6	0	0.0	
	Always	1	9.1	1	2.2	0	0.0	
Intention to Recommendation	No chance	2	18.2	0	0.0	0	0.0	34.277*** (0.001)
	Almost no chance	5	45.5	3	6.5	0	0.0	
	Might or Might not	1	9.1	7	15.2	2	15.4	
	Almost sure	1	9.1	18	39.1	9	69.2	
	Certain	2	18.2	18	39.1	2	15.4	

*** $p<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시술후 부작용 효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의사라고 해서 부작용이 적은 것이 아니며, 반대로 미용 전문가, 혹은 타투이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의사대비 많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부작용에 대한 응답 비율 중 의사로부터 시술받은 후 피시술자가 응답한 부작용은 36.4%로 가장 높으며 미용 전문가로부터의 부작용은 21.8%로 의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Table 5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현행 제도의 인식과 전문 자격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집계하여 요약·제시한 표이다. 응답자 중 49.5%가 의사가 아닌 시술자의 시술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9.6%가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적합한 시술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8.9%, 1.0%로 집계되는 한편, 미용 전문가와 투타 전문가는 각각 61.4%, 21.8%로 의사보다 더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다. 반영구화장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22]에서도 반영구화장은 의료인이 아닌 미용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5.1%를 차지하는 한편, 미용 전문가의 기술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72.1%로 높게 집계되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의료인과 미용 전문가의 기술 부작용이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6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미용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은 73.7%, 제도화 찬성 여부에는 78.8%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5. Perception related to Current State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Category	Likert-Scale	Frequency(N)	Percent(%)
Awareness about Illegal Procedure	Not at all aware	22	22.2
	Slightly aware	21	21.2
	Moderately aware	7	7.1
	Very aware	34	34.3
	Extremely aware	15	15.2
Agreement of Current Legal System	Strongly disagree	26	26.3
	Disagree	33	33.3
	Neither agree nor disagree	23	23.2
	Agree	12	12.1
	Strongly agree	5	5.1
Suitable Person for Procedure	Doctor	9	8.9
	Nurse	1	1.0
	Beautician	62	61.4
	Tattooist	22	21.8
	Etc.	7	6.9
Possibility of Side Effect	More side effect from Beautician	4	4.0
	Slightly more side effect from Beautician	13	13.1
	No difference	60	60.6
	Slightly more side effect from Doctor	8	8.1
	More side effect from Doctor	14	14.1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Strongly no necessary	1	1.0
	No necessary	7	7.1
	Neutral	18	18.2
	Necessary	41	41.4
	Strongly necessary	32	32.3
Agreement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Strongly disagree	1	1.0
	Disagree	5	5.1
	Neither agree nor disagree	15	15.2
	Agree	41	41.4
	Strongly agree	37	37.4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의료인이 실시하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피시술자의 의견에 기반하여 제도의 개선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패널과 피시술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대다수의 시술이 비

의료인에 의해 시행됨에도 품질, 만족도는 비의료인이 더 높고 부작용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10-12]와 동일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는 한편 전문 자격사 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국내 미용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추세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시장 여건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2019년 10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하며 의료인만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증적으로 지지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반하여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위한 전문 자격사 제도의 구축에 요구되는 요소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의 발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R. Park, K. K. Lee & Y. S. Song. (2019). A Study on the Behavior of Hygiene Management and Preference of Cosmetic Procedure Needle according to Semi-permanent Makeup.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5(1), 106-117.
- [2] M. Hosoda, E. F. Stone-Romero & G. Coats. (2003).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Job-Related Outcomes: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Personnel Psychology*, 56(2), 431-462.
- [3] A. Parasuraman, V. Zeithaml & L. L. Berry. (1988). Servqual. *Journal of Retailing*, 64(1), 12-40.
- [4]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Domestic Statistical Data*. Name of Web Site.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5] S. N. Hong. (2017). The Effect of Semi-Permanent Makeup Treatment Satisfaction on Positivity or Negativity Eff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3(1), 187-197.
- [6] D. Y. Kim & T. B. Choe. (2014). A Research in Experienced Customer's Perception Levels on Semi-Permanent Makeup: Comparison of Korea, Japan and Americ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0(6), 1083-1090.
- [7] J. H. Woo & Y. S. Song. (2019). A Study on Awareness, Cosmetic Behavior, Satisfaction and Re-treatment of Semi-permanent Makeup.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5(1), 91-105.
- [8] S. M. Kwon. (2017). *The Study of Korean Semi-permanent Makeup Educational awareness, educational satisfac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Recommendation : Targeting Chinese Traine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9] S. M. Kwon & K. H. Kim. (2018). Effects of the Recognition of and Satisfaction Recommendations for Semi-permanent Makeup for 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 9(2), 63-76.
- [10] E. J. Kang. (2007). *A Study on Legalization of Tattooing*. Graduate School of Design Management, Chosun University, Gwangju.
- [11] Y. J. Jeong & J. H. Lee. (2017). A Study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Private Certificates for and the Regular Education of Semipermanent Make-u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 18(2), 169-181.
- [12] G. H. Park. (2016). A Study of the Effects of Semi-permanent Makeup, Customers'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Customers' Intention to Get the Treatment Again and Recommend it to Ot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 17(1), 189-205.
- [13] C. J. Kim. (2007). *The Necessity and Policy Direction of the Legalization of the New Civil Service*. The List of Policy Materials for Parliamentary Audit. Seoul.
- [14] S. Y. Cho & J. M. Lee. (2013). A Study on Semi-permanent Special Make-up Technique for Effective Eyebrow Correction.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19(5), 822-832.
- [15] D. Y. Kim. (2015). *A Comparison Study on Treatment Methods of Semi-permanent Make-up by Korean, Japanese and America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 [16]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9). *Judicial Precedent*. <http://www.law.go.kr/LSW//main.html>
- [17] H. J. Ko & Y. S. Kim. (2003). A Study on the Activity of Korean Semipermanent Make-up System. *Asian Journal of Beauty Cosmetology*, 1(13), 11-23.
- [18] D. Y. Kim. (2012). *A Research on Change of Customers' Perception Levels on Semi-permanent Make-up*.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Seoul.
- [19] The Republic of Korea Cheong Wa Dae. (20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0123>
- [20] H. J. Ko & Y. S. Kim. (2003). A Study on the Activity of Korean Semipermanent Make-up

System.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1(3), 11-23.

- [21] S. W. Kim. (2019). Checklist and Tattoo Contracts to Legalize Non-medical Personnel Tattoos and to Ensure the Rights of Tattoo Consumers. *Kyunghee University Global Business Law Review*, 12(1), 125-159.
- [22] H. H. Kim. (2018). *A Study on the Actual Survey of Eemi-permanent Make-up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Legal System*.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 Security Policy, Silla University, Busan.

김 신 희(Shin-Hee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디자인학석사)
- 2018년 2월 : 건국대학교 디자인 조형학과(디자인학박사)
- 2015년 8월 :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9년 현재 :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교수
- 관심분야 : 피부, 네일아트
- E-Mail : sinhee1007@kku.ac.kr

신 동 화(Dong-Hwa Shin)

[정회원]



- 2015년 8월 : 건국대학교 생물공학 이학박사
- 2018년 3월 : 오산대학교 뷰티 & 코스메틱전공 교수
- 관심분야 : 피부, 화장품
- E-Mail : 3257shin@hanmail.net